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합55753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5. 9. 4.

판결 선고 2015. 10. 2.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92,347원 및 그 중 120,973,342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3. 7. 25.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96,000,000원, 보증기한 2013. 7. 25.부터 2014. 7. 24.까지, 보증상대방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는 장차 원고가 신한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비용, 미납보증료 및 지연 보증료, ③ 위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7. 30. 신한은행으로부터 3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4. 3. 18. 폐업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9. 신한은행에 합계 276,273,828원(= 원금 275,146,843원 + 이자 1,126,9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이후 피고 A로부터 155,000,000원을 회수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119,005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A의 법률관계 및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조합원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는 2001. 12. 21.경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출자금을 납부하고 출자증권을 교부받고,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A의 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 하자보수보증계약, 선급금보증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다. 3) 피고 A는 2013. 11. 8. 피고 조합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3. 11. 11. 접수 제88483호로 채권최고액 126,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합계 125,092,347원(= 대위변제금 120,973,342원 + 확정손해금 4,119,00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20,973,3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9.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하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3. 11. 8.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성립되어 있었고, ②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80일이 지난 후인 2014. 1. 28.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2014. 3.1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A의 재무상태 악화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아해케미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가 5,000,000원의 지리산하이츠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었고(피고 A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443좌에는 이미 피고 조합이 질권을 설정하여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 296,000,000원, 주식회사 아해케미칼에 대한 25,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다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 A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무 변제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계약의 도급인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그에 따라 피고 A는 2001. 12. 21. 이후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계약, 하자보수보증계약, 선급금보증계약 등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 피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보증한도액은 6,273,420,200원이고, 보증잔액은 5,902,786,267원에 달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은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의 경우 당해 공사계약에 대해 하자보증서가 발급되면 보증을 해제하고, 하자보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15일이 지나면 보증을 해제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합계 223,404,700원의 보증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보증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각 보증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은 사실을 피고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다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보증해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해제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기도 하는 점, 보증해제처리는 피고 조합이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할 때 지침으로 삼기 위해 내부적으로 당해 보증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실제로 당해 보증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지급 등의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인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도 피고 조합의 내부 업무 시스템에는 피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보증잔액은 5,902,786,267원인 것으로 표시되었고, 피고 조합은 그에 기초하여 피고A에게 추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보증잔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피고 조합이 공제된 보증잔액을 기초로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피고 조합은 약 3개월 동안 피고 A에게 총 13회에 걸쳐 보증금액 합계679,011,063원에 달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이는 위 보증한도에서 보증잔액을 제한 금액인 370,633,033원을 상회하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 조합의 근저당권 설정요구가 이례적이거나 과도한 담보의 징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잔액에 비하여 보증한도가 충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제공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피고 A에게 추가 담보제공의 요구를 할 경우 피고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이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피고 A로서는 피고 조합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조합 사이에 통모가 있었다거나 피고 A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⑤ 또한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 조합에 대한 기존 채무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피고 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존 계약이행보증계약 등의 총 보증금액이 당시 5,902,786,267원에 달하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126,100,000원 보다 훨씬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역시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자신의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황성욱, 판사 박서우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3층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5552.47㎡

지하1층 5531.5㎡

1층 4771.92㎡

2층 4774.27㎡

3층 1757.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39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6959.6㎡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6,959.6분의 5.176

